

조경설계기준 부분개정(안) 신구조문대비표

구 분		현행	개정(안)
쪽번호	조항		
344	제26장 하천조경	(3) 체육시설 중 축구장 골대, 농구대, 테니스 지주 및 보호막(펜스) 등은 홍수상황에 따라 일시 철거가 가능한 이동식 구조물로 계획한다.	(3) <u>체육시설 중 축구장 골대, 농구대 및 테니스 지주 등은 홍수상황에 따라 일시 철거가 가능한 이동식이거나 눕힐 수 있는 구조물로 설계한다. 단, 눕힐 수 있는 구조물은 고정장치를 설치하여 떼내려가지 않고 유수에 장애가 없는 형식으로 설계한다.</u>
	26.5 하천조경설계 26.5.9 시설물 설치 가. 체육시설 설치	(신 설)	(4) <u>체육시설의 보호막(펜스)은 경기 중 공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설치하며, 홍수상황에 따라 일시 철거가 가능한 이동식이거나 눕힐 수 있는 구조물로 설계한다. 단, 눕힐 수 있는 구조물은 고정장치를 설치하여 떼내려가지 않고 유수에 장애가 없는 형식으로 설계한다.</u>

조경설계기준 부분개정문

제26장 하천조경

26.5 하천조경설계

26.5.9 시설물 설치

가. 체육시설 설치

- (1) 체육시설의 설치는 지역의 문화, 역사, 여건에 적합한 창의적 계획 및 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대하여는 미관설계도 적극 고려한다.
- (2) 인구 밀집지역이나 도심지에 인접한 친수지구의 체육시설 설치에 이용자 수요조사 등을 거쳐 결정하되 총면적은 다음 기준 이내로 한다.
 - (가) 친수구역이 500,000m² 이하인 경우 부지면적의 10% 이하 면적
 - (나) 친수구역이 500,000m² 이상 1,000,000m² 미만인 경우는 부지면적의 8% 이하 면적
 - (다) 친수구역이 1,000,000m² 이상인 경우, 친수구역 부지면적의 8% 이하 면적으로 하되, 100,000m²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
- (3) 체육시설 중 축구장 골대, 농구대 및 테니스 지주 등은 홍수상황에 따라 일시 철거가 가능한 이동식이거나 눕힐 수 있는 구조물로 설계한다. 단, 눕힐 수 있는 구조물은 고정장치를 설치하여 떠내려가지 않고 유수에 장애가 없는 형식으로 설계한다.
- (4) 체육시설의 보호막(펜스)은 경기 중 공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설치하며, 홍수상황에 따라 일시 철거가 가능한 이동식이거나 눕힐 수 있는 구조물로 설계한다. 단, 눕힐 수 있는 구조물은 고정장치를 설치하여 떠내려가지 않고 유수에 장애가 없는 형식으로 설계한다.